



성과급 지급규정

제정일	2018. 9. 1
개정일	2021. 7. 1
개정차수	2차
담당부서	기획예산과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동서울대학교 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의 성과급에 관한 지급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대학의 교직원에게 적용하며 성과급과 관련한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제 3조 (지급대상) 성과급은 다음 각 호에 기여한 교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, 기여정도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다.

1. 대학 재정지원사업

2. 대학 기본역량 진단 (개정 2021. 7. 1)

[제목개정 2018.10. 1]

제 4조 (예산편성 및 집행) ① 성과급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하고, 해당 사업 주관부서에서 성과급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기획예산과에 가예산 배정을 요청하여 집행하도록 한다.

② 산단 회계 등 독립회계에 편성된 예산은 주관부서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[제목개정 2018.10. 1]

제 4조의 2 (지급등급 및 지급액) ① 제 3조에 따른 각 사업책임자는 사업에 대한 기여 정도에 따라 각 교직원의 성과급 지급등급을 부여한다. 이때 지표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반영할 수 있다.

② 기여 등급 및 지급 비율은 [별표 1]과 같다.

③ 지급비율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각 사업별 중요성에 따라 총장이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8.10. 1]

제 5조 (성과급에 관한 심의) 성과급에 관한 심의는 대학발전기획위원회에서 하며,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단, 외부지원금 사업비에서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관련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.

1. 성과급 지급계획에 관한 사항

2. 성과급 지급 대상자 선정 및 금액에 관한 사항

3. 기타 성과급에 관한 주요 사항

제 6조 (지급의 제한) 총장은 휴직중인 자, 파견중인 자, 장기연수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 7조 (비밀유지의 의무) 성과급 업무 담당자는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 8조 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 1】 지급 등급 및 비율 (신설 2018.10. 1)

지급 등급	기준금액에 대한 지급 비율
S등급	120%
A등급	100%
B등급	80%
C등급	60%
D등급	40%
E등급	20%